

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27
----------	-----

2022년 9월 28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3. 상정일자 :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2년 9월 23일 상정· 의결(수정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)

1. 제안이유

- 계절적 변화·미세먼지, 경제적 부담 없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필요
- 이에 따라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운영 및 이용료 부과근거 필요
- 자치구의 지속적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경비 지원 근거 마련 필요

2. 주요내용

-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(안 제7조의2제1항)
-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이용료 징수 근거 신설(안 제7조의2제2항)
-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이용료 감면 근거 신설(제7조의2제3항)
-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(안 제7조의2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참조

(2) 입법예고 (2022.6.9. ~ 6.29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: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인 키즈카페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립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운영 및 이용료 부과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관련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함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(안 제7조의2)

-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조1) 및 제7조2)에 따라 시장이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필요한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,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1)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)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(지원사업)

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

2.~6. (생략)

□ 시장의 시설 설치 및 운영 (안 제7조의2제1항)

- 안 제7조의2제1항은 현행 조례 제7조제1호의 ‘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’ 중 구체적으로 ‘실내’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함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.

□ 시설 이용료 부과 (안 제7조의2제2항)

- 안 제7조의2제2항은 개정안 1항에 따라 설치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이용료 부과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함임.
 -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³⁾에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민들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용료 부과에 관해서는 조례에 확정금액으로 정하거나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 - 따라서 안 제7조의2제2항의 ‘이용료는 원가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’ 규정은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3) 「지방자치법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□ 이용료 감면대상 및 기준 (안 제7조의2제3항)

- 안 제7조의2제3항은 개정안 제7조의2제2항(이용료 부과)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기준을 별표(붙임1)에 별도로 정하고 있음.
- 동 개정안을 통해 이용료를 부과하려는 시설은 시립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로 보훈관계 및 기타법령(붙임24)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(별표1의 제4호~제11호)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(수급자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)에 대해서는 ‘서울특별시 주소지를 두고 있는’ 등의 조건을 두도록 검토가 필요함.
- 또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통상적으로 아동 및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이용료 감면 기준 대상에 아동 및 보호자로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집행상 혼란이 없도록 검토가 필요함.

□ 자치구 보조금 지급 (안 제7조의2제4항)

- 안 제7조의2제4항은 자치구 주도로 공간을 발굴하여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, 자치구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.
- 한편 서울특별시는 “2022년 예산 편성” 및 지난 7월 14일 “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(의안번호 21)”에 “서울공공 키즈 카페 조성 사업”으로 69억원을 편성하여 자치구에 15개소

4) 행정안전부·국가보훈처, (2020년 2차 자치법규 기획정비)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, p3

와 시립형 키즈카페 1개소를 설치 또는 설치예정임.

- 동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1차년도 20개소 목표로 향후 4년간 총 10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72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바, 기존 키움센터 활용 등 개소 확장에 대한 정교한 설계와 향후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할 것임.
- 또한 지난해 9~10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강남구가 운영하는 지하 실내놀이터가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⁵⁾ 공공형 시설에 안정성 검토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.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절적 변화·미세먼지, 경제적 부담 없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, 안 제7조의2제2항(이용료 부과)에서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「지방자치법」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임.

5) 김준태 (2022.06.28.) 강남구 지하 실내놀이터 '화재 위험 취약'...서울시 감사서 적발, 연합뉴스, url생략

- 또한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바 사업을 확장함에 있어 기존 사업과의 융합에 대한 고려와 지속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수정안 요지

1. 수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제156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(안 제7조의2제2항)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관련 12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9월 23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제156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(안 제7조의2제2항)

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의2제2항 “시장이 따로”를 “규칙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7조의2(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 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<u>시장이</u> <u>따</u> <u>로</u> 정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p> <p>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의2(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규칙으로</u> -----.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(제7조의2제3항 관련)

대 상	감면액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. “다둥이 행복카드”를 소지한 가족 	<p>전액 감면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7조의2(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u></p> <p><u>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